

1장

비자 및 체류

Visa and Stay in Korea

1. 사증(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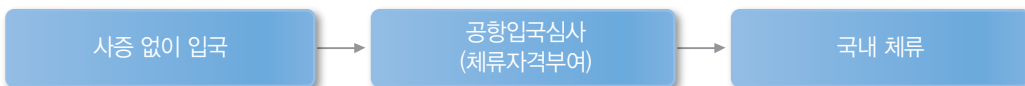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미리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야 하며, 사증은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 보다는 영사의 “입국 추천행위”로 통상 소지여권에 스티커(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명시)로 발급됩니다.

- 입국방법
- 기업투자(D-8)사증
- 동반(F-3)사증

1-1 입국방법

외국인의 입국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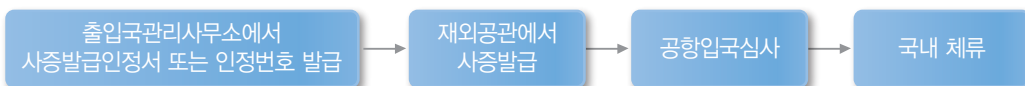
- 사증 없이 입국하여 출입국 향에서 입국심사 시 체류자격 및 기간을 부여 받아 입국하는 방법



-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방법



- 사증발급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초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를 발급받아 재외공관에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방법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출입국관리법 제10조)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체류자격은 활동범위에 따라 36개로 분류되며, 투자외국인 및 투자법인의 필수전문인력은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됩니다.

1-2 기업투자(D-8)사증

(1) 대상

기업투자(D-8)사증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연구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에게 발급됩니다. 단, 국내에서 채용하는 외국인은 필수전문인력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행정업무 또는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기술자 및 직접적인 용역서비스 제공자도 제외됩니다.

※ 필수전문인력

• 임원(Executive)

조직 내에서 조직관리를 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와 감독만을 받는 재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음

•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 지휘, 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 전문직, 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 감독, 통제하거나 일상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피 감독자가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일선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 행위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지 않음)

• 전문기술자(Specialist)

해당기업 서비스의 연구, 설계, 기술, 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2) 발급신청방법 및 절차

기업투자(D-8)사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공관장은 체류기간 1년 이하의 기업투자(D-8)사증 발급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국인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 사증발급 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를 발급받아 이를 피초청인에게 전달, 피초청인이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동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로 사증발급을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 없이 입국하거나 단기사증을 받아 입국한 경우,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투자종합상담실(KOTRA)에서 체류자격변경 허가 등을 신청

<기업투자(D-8-1)사증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사증발급신청시에는 여권사본),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 발행)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3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
- ※ 파견명령서는 본사 발행이 원칙, 지사에서 파견이 되는 경우에도 파견명령서는 외투기업등록증명서상의 투자자 즉, 본사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파견 기간을 반드시 명시한다.

- 주재활동의 경우 재직증명서(본사 발행)
- 필수 전문인력 입증 서류: 자격증(기술자), 경력증명서, 조직도, 학위증 중에서 택일
- 법인 납세사실증명(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 등 포함)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 현물출자인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 투자금액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 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 물품구매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
 - 국내은행계좌 입출금내역서 등
- 법인통장 및 입출금내역서
- 사업장존재 입증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경험관련 국적국 서류(필요시 징구)

수수료(수입인지): 상호주의 등 원칙에 따라 국가별 상이하므로 재외공관에 문의

※ 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3 동반(F-3)사증

동반(F-3)사증은 기업투자(D-8)자격 해당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가 발급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공관장은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동반(F-3)사증 발급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국인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 사증발급 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를 발급받아 이를 피초청인에게 전달, 피초청인이 재외공관에 가서 동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로 사증발급을 신청
- 가사정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 없이 입국하거나 단기사증을 받아 입국한 경우, 투자종합상담실(KOTRA) 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 허가 등을 신청

〈동반(F-3)사증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여권사본)
 -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 · 호적등본 등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수입인지): 상호주의 등 원칙에 따라 국가별 상이하므로 재외공관에 문의
 ※ 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체류

외국인은 허가 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외국인등록 대상자로 외국인등록신청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신청서에 체류자격별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체류 도중 기존의 외국인등록사항, 체류자격, 체류기간, 근무처, 체류지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자격변경허가
- 외국인등록
- 체류기간연장
- 재입국허가
- 체류지변경신고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 자격외활동허가
- 근무처변경·추가허가

2-1 체류자격변경허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업투자(D-8)사증을 발급 받지 못하고 단기사증(C-3) 또는 사증 없이 입국(B-1, B-2)한 사람과 그 동반가족 또는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장기체류 중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동 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투자가 및 그 동반가족은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허가기간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투자종합상담실(KOTRA)에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면 기업투자(D-8)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종합(C-3)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단체관광객 중에서 순수관광목적(C-3-2), 의료관광(C-3-3), 산업연수(D-3), 비 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관광취업(H-1)은 협정에 자격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국민에 대해서만 자격 변경 불허.]

〈체류자격변경(D-8-1)허가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별지제34호서식),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 발행)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면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3개월이내 발급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

※ 파견명령서는 본사 발행이 원칙, 지사에서 파견이 되는 경우에도 파견명령서는 외투기업등록증명서상의 투자자 즉, 본사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파견 기간을 반드시 명시한다.

- 주재활동의 경우 재직증명서(본사 발행)
- 필수 전문인력 입증서류: 자격증(기술자), 경력증명서, 조직도, 학위증 등에서 택일
- 법인 납세사실증명(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 등 포함)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 현물출자인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발행), 세관 수입신고필증
- 투자금액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 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 물품구매영수증, 사무실인테리어비용 등
 - 법인통장 및 입출금내역서 등
- 사업장존재 입증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 영업실적 서류
 -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
 - 수출신고필증(수출입면장)
 - 수출대금회수 증명서류(통장 등 국내계좌입출금내역서)
 - 사업계획서(투자금 사용내역, 향후 사업계획)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경험관련 국적국 서류(필요시 징구)

※ 기업투자(D-8)자격변경허가 수수료 면제

2-2 외국인등록

외국인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투자종합상담실(KOTRA)에 외국인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사증으로 입국하여 기업투자(D-8)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동시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투자종합상담실(KOTRA)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만17세 이상 외국인은 등록 시 본인여부 확인 및 지문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투자가 또는 임직원이 외국인투자기업 근무를 마치고 완전히 출국할 때에는 출국하는 공항, 항만 출국심사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D-8)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재외공관에서 기업투자(D-8)자격을 직접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인 외국인등록 때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를 준용하여 제출함(투자기업등록증 사본,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은 생략). 단,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

※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 수수료 면제

2-3 체류기간 연장

기업투자(D-8)소지자의 경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투자종합상담실(KOTRA)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하며,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면 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시에는 투자기업의 규모, 투자금액, 영업실적 등에 따라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외국투자자로서 사업 활동 또는 파견근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 활동 사실이 없으면 횟수에 제한 없이 체류기간연장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연장(D-8-1)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 발행)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3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을 변경한 경우에만 필요함)
- 법인 납세사실증명(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 등 포함)
- 체류지 입증서류(체류기간만료안내통지문, 공과금납부 영수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중에서 택일)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 현물출자인 경우
 - 현물출자원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발행), 세관 수입신고필증

• 투자금액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 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 물품구매영수증, 사무실인테리어비용 등
 - 법인통장 및 거래내역서 등
- 사업장존재 입증서류
 -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 세금체납이 없다는 납세증명서
- 영업실적 서류
 -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
 - 수출신고필증(수출입면장)
 - 수출대금회수 증명서류(통장 등 국내계좌입출금내역서)
 - 사업계획서(투자금 사용내역, 향후 사업계획)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경험관련 국적국 서류(필요시 징구)

※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 수수료 면제

2-4 재입국허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이 일시 출국하였다가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투자종합상담실(KOTRA)에 단수(Single) 또는 복수(Multiple) 재입국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국 당일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재입국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가는 여권의 유효기간, 체류허가기간, 재입국허가기간(단수: 1년, 복수: 2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시행규칙 제44조의2)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과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0.11.16.)
1. 영주(F-5)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2.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 10. 문화예술(D-1)부터 28. 동반(F-3)까지, 28의4. 결혼이민(F-6)부터 31. 방문취업(H-2)까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체류기간으로 한다)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D-8 소지자 포함)

※ 재입국허가 면제국가

수리남,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핀란드, 칠레(C-2, D-7, D-8, D-9 체류자격소지자)

※ 재입국 허가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통합양식)
- 수수료(전자수입인지 등): 단수(3만 원), 복수(5만 원)

※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 수수료 면제

2-5 체류지 변경신고

기업투자(D-8)소지자의 경우,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사람은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투자종합상담실(KOTRA), 또는 새로운 체류지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위반으로 처벌(벌칙금)을 받습니다.

〈체류지변경 신고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2-6 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

기업투자(D-8)소지자로서 다음 신고사유가 발생한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투자종합상담실(KOTRA)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기업투자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이나 추가된 경우

만약 등록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위반으로 처벌(과태료)을 받습니다.

〈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변경사항 입증서류

2-7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기업투자(D-8)소지자로서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미리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일계열 회사내 주재(D-7)자격이나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필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에 대한 체류자격외활동은 투자종합상담실(KOTRA)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격 외 활동(D-8-1)허가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 파견명령서(본사발행)
- 원 근무처와 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설치 신고(허가) 관련 서류(지사 설치허가서 등)
- 원 근무처 장의 추천서
- 영업실적증명 서류: 법인납세사실증명서 등
- 수수료(전자수입인지 등 12만 원)

동 제출서류는 투자종합상담실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한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에 대한 주재(D-7) 자격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 시에 한하며, 기타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관련 제출 서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8 동일계열회사 내에서 근무처의 변경 및 추가 신고

기업투자(D-8)소지자의 경우,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그의 근무처가 변경되거나 추가되었을 때 근무처 변경 또는 추가 신고를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투자종합상담실(KOTRA)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는 같은 계열회사 내의 근무처 변경 및 추가에 한합니다.

〈근무처 변경 및 추가(D-8-1)신고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별지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 파견명령서
- 추가·변경 근무처의 영업자금도입증빙서류
- 추가·변경 근무처의 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 추가·변경 근무처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추가·변경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 추가·변경 근무처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동일계열사 입증서류
- 수수료(전자수입인지 등): 없음

3. 투자외국인 우대제도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출입국과 체류상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규모에 따라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운영하기도 하고, 조건에 부합될 경우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KOTRA 투자종합상담실은 투자컨설팅에서 체류의 애로사항 해결 등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영주(F-5)자격 변경
-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 허용
- 외국투자가 전용 출입국심사대 운영
- 자동(무인)출입국 심사대 운영
- 외국투자가 체류허가 전용 창구 운영
- 외국투자자의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면제
- 체류신청 시 부여기간의 상한 확대

3-1 영주(F-5)자격 변경

다국적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외국투자가, 국내진출 다국적기업 임원 및 해외 첨단기술 인력 등에 대하여 영주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은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 영주자격 신청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투자자 본인만 영주자격 신청대상임)로 국민을 5인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한 자
-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기업투자(D-8)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영주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신분존속기간까지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의무 면제
- 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됨으로써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 제한 해제
- 2년 범위 내 재입국허가 신청의무 면제대상임
- 강제퇴거 제한 등

3-2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 허용

고액투자가의 국내체류 편의증진을 위하여 영어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가사보조인의 고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보조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금액이 50만 달러 이상으로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배 이상인 외국인 투자가(대표 및 임직원)
- 단, 50만 달러 미만 투자가의 경우에는 첨단정보업종*으로 내국인 상시 근로자를 3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한함

※ 임직원의 범위

필수전문 인력의 범위 중 임원(executive) 및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 첨단정보업종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KOTRA(Contact Korea)가 정한 골드카드(Gold Card)발급대상인 8개 첨단기술분야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전자상거래(IT포함), 환경 및 에너지, 신소재]

가사보조인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20세 ~ 58세로 중졸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소지자여야 하며, 초청자 1인당 가사보조인 고용은 1명으로 제한됩니다. 고용계약의 종료, 고용 해지, 고용인의 기업투자(D-8)자격 상실 등 가사보조인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출국해야 합니다.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 허용〉

투자자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 사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청인의 초청자격과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장은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F-1)사증 발급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국인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 사증발급 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 국내에 있는 초청인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사증발급 인정서(또는 인정번호)를 발급받아 이를 피초청인에게 전달, 피초청인이 재외공관에 가서 동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로 사증발급을 신청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여권사본,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사진 1장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고용주의 재직증명서(신분증명서)
- 고용주의 연간 소득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서류(투자금액 50만 달러 미만인 사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
-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수입인지): 상호주의 등 원칙에 따라 국가별 상이하므로 재외공관에 문의

* 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3 외국투자가 전용 출입국심사대 운영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와 그의 동반가족들의 인천공항 출입국 편의를 위하여 외국투자가 전용심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4 투자가 자동(무인)출입국 심사대 운영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는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자동출입국심사등록센터)등 출입국공항에서 여권 정보와 지문 및 얼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5 외국인투자가 체류허가 전용 창구 운영

KOTRA 투자종합상담실(Investment Consulting Center)

외국투자자의 사증 및 체류 관련 편의를 위하여 KOTRA에서 투자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파견되어, 체류지 관할구역 제한 없이 기업투자(D-8)자격 해당자 및 그의 동반가족에 대한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한국출생 자녀의 체류자격부여 및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업무, 체류지변경신고와 기업투자(D-8)체류자격 소지자의 근무처 변경·추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투자지원센터(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포함)에서도 외국인투자가 전용 창구를 설치하여,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 등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등의 체류허가와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3-6 외국인투자가의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면제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체류허가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드립니다.

체류허가	수수료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3만 원(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체류기간연장허가	6만 원(전자수입인지 등)
체류자격변경허가	10만 원(전자수입인지 등)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12만 원(전자수입인지 등)
재입국허가	단수 3만 원(전자수입인지 등), 복수 5만 원(전자수입인지 등)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수수료(12만 원)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2천 원) 수수료는 내야합니다.